##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48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 : 김태년 • 박균택 • 윤준병

이강일 • 윤후덕 • 문진석

박희승 • 채현일 • 송옥주

이학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 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 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 3항 신설).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
	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
	<u>지하여야 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